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사·수사 종료를 통보받은 군인의 소속·감독 부대(기관)의 장이 징계 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청 가능한 수사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군인이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행위 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른바 “軍내 갑질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통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사·수사결과 통보 시 감사원·수사기관에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자료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8조의2 신설)

- 1) 감사원의 조사자료 중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군인사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징계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이 감사원장과 협의하는 자료를 요청자료로 규정

2) 군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중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의견서, 혐의자·관련자 대상 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군인사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징계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이 군 수사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를 요청자료로 규정

3)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중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불송치 결정서, 혐의자 대상 신문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군인사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징계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이 수사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를 요청자료로 규정

나. 「군인 징계령」상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통보 안내의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군인사법」상 징계처분 결과통보의무의 요건을 인용하여 상호 일치시킴(안 제22조3제1항)

다. 군내 갑질행위의 행위태양을 구체화(안 제22조3제5항 신설)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

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위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영 제20조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

○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다른 공무원
-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기관(해당 부대·기관에 소속된 부대·기관을 포함한다)의 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조사·수사 자료의 범위) 법 제59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감사원의 조사 자료: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이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2. 군검찰·군사법경찰의 수사 자료: 수사개시통보서,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의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이 국방부검찰단장·국방부조사본부장, 그 밖의 군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3.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수사개시통보서,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

서, 혐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이 검찰총장·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제22조의3제1항 본문 중 “제20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를 “법 제5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징계처분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9조제8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20조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2(조사·수사 자료의 범</u> <u>위) 법 제59조의3제4항 전단에</u> <u>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u> <u>· 수사 자료”란 다음 각 호의</u> <u>자료를 말한다.</u> <u>1. 감사원의 조사 자료: 징계처</u> <u>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u> <u>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u> <u>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u> <u>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u> <u>는 각군 참모총장(법 제64조</u> <u>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권한</u> <u>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u> <u>을 포함한다)이 감사원장과</u> <u>협의하여 정하는 자료</u> <u>2. 군검찰·군사법경찰의 수사</u> <u>자료: 수사개시통보서, 범죄처</u> <u>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u> <u>소 결정서, 송치 의견서, 혐의</u> <u>자·관련자에 대한 신문조서,</u> <u>진술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u> <u>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u> <u>장(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u> <u>모총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u>

	<u>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이</u> <u>국방부검찰단장·국방부조사본</u> <u>부장, 그 밖의 군 수사기관의</u> <u>장과 협의하여 자료</u>
제22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 분등의 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 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u>제20조제</u> <u>2항제6호 또는 제8호</u> 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u>법</u> <u>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u> <u>등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u> <u>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u> <u>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u>	3. <u>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u> <u>관의 수사 자료: 수사개시통보</u> <u>서,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u> <u>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결</u> <u>정서, 불송치 결정서, 혐의자</u> <u>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및</u> <u>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u> <u>군 참모총장(법 제64조에 따</u> <u>라 해군참모총장이 권한을 위</u> <u>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u> <u>함한다)이 검찰총장·경찰청</u> <u>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u> <u>협의하여 정하는 자료</u>
	제22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 분등의 결과 통보) ① ----- ----- <u>법 제59조</u> <u>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u> ----- ----- <u>징</u> <u>계처분등</u> ----- ----- ----- . -- -----

없는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 ④ (생략) <u><신설></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u>⑤ 법 제59조제8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u> <u>2. 제20조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818